

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3-008호

「2023년 연안안전지킴이」 모집 공고

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2023년도 직접일자리사업「연안안전지킴이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□ 모집 분야 및 선발 인원

사업명	인원	담당 업무
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(연안안전지킴이)	6명 (예비인력 1명 별도)	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구역 안전순찰 지원 등

□ 운영 개요

- 접수기간: '23. 3. 20.(월) ~ 4. 7.(금) / 19일
- 활동기간: '23. 5. 5. ~ 10. 31./ 약 6개월
- 활동비: 월 548,340원
- 근무시간: 월 15일(49시간) / 평일 11일 (일 3시간), 주말 4일 (일 4시간)

□ 모집 인원: 군산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 6명(예비인력 1명 별도)

파출소	해망파출소	비응파출소	새만금파출소
활동장소	군산 내항	비응항	무녀도 취동섬
인원(6명)	2	2	2
예비인력(1명)	1		

□ 지원 자격

- 선발대상: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
- 결격대상: 공공기관 등 일자리사업(전일제, 동일시간) 참여자

□ 제출 서류

- 공통: 지원서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주민등록등본, 반명함 사진 1매
- 선택: 취업취약계층, 관련 자격증, 채용신체검사서(합격자) 등

□ 문의처: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☎(063)-539-2248

☞ 세부사항은 「2023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안내문」 참조바랍니다.

2023. 3. 14.



군산해양경찰서장



2023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안내문

모집 요강

- 연안안전지킴이 임무: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·지도활동 등
- 모집 인원: 군산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 6명(예비인력 1명)

파출소	해망파출소	비응파출소	새만금파출소
활동장소	군산 내항	비응항	무녀도 취동섬
인원(6명)	2	2	2
예비인력(1명)	1		

- 운영 기간: 2023. 5. 5. ~ 10. 31 <6개월>
- 활동 시간: 주말 4일(1일 4시간), 평일 11일(1일 3시간), 월 15일 / 월 548,340원
- 지원 자격

-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(주소지 기준)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
- 그 밖에 연안사고예방 활동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
※ 결격사유: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(지사체)·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

지원방법 및 선발

- 접수기간 : 2023. 3. 20.(월) ~ 4. 7.(금) <19일간>
- 접 수 처 :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안전관리계) 및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
- 제출 서류
 1. 필수 제출 : ① 지원서(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해양경찰서 파출소 사무실 비치) ② 반명함 사진 1매
③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(신분증 지참)
 2. 선택 제출 : ⑤ 해양안전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⑥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⑦ 관련 업무경력증명서
- 선발 방법: 해양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택제출 서류심사, 체력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, 심사평가표(심사기준)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
- 문 의 처: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☎ (063) 539-2248

심사 기준

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		배점	점수
1. 서류 심사		40	
가.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(1개당 10점, 최고 20점까지) - 선택제출 1번		20	
나.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(1개당 5점, 최고 10점까지) - 선택제출 2번		10	
다. 관련 업무 경험 - 선택제출 3번		10	
		경찰·군인·소방·교정(10)	없음(5)
2. 체력 검사		30	
□ 경찰관서 측정	▶(종 목) ①악력 측정, ②30초 앉았다 일어나기, ③보행 상태 ▶(점 수) 3개 종목 최종 합산	30	
3. 면접 평가		30	
가.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		10	
나. 지킴이 활동 적합성·성실성		10	
다.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열의		10	
합 계		100	

선택제출 서류 기준

- 제출 원칙: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, 해양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서류 기준충족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

1. 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(①~⑦)에 한하여 인정)

- ① 저소득층 ② 여성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민자 ⑤ 한부모가족 ⑥ 장기실직자 ⑦ 성매매피해

대 상		확인 자료(1개만으로도 인정)	
①저소득층	소득 60% 이하	◦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, 국민연금 소득월액,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,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	
②여성가장	공 통	◦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	
	배우자 有	가출·행방불명	◦ 실종신고서
		장애	◦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	질병	◦ 의사의 진단서
		군복무	◦ 복무확인서
		학교 재학	◦ 재학증명서
		교도소 입소	◦ 수용증명서 또는 형확정판결문
		이혼소송 제기	◦ 이혼소송확인서
	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인 배우자	◦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기타 가족 생계부양	◦ 통·반장의 확인서		
③북한이탈주민		◦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	
④결혼이민자		◦ 혼인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)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	
⑤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	◦ 한부모가족 증명서(읍면동 주민센터)	
⑥장기실직자(6개월 이상)		◦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 등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	
⑦성매매피해자여성		◦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	

※ 유의사항 : 기초연금·기초노령연금 수급만으로는 '저소득층' 인정이 어려움

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 방법

- “가구원수”에 따라, 해당 “가구의 소득합산액”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로 판단

▲ 예: 2인 가구, 소득 합산액이 2,073,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에 해당

<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(단위: 원)>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 (60%)	1,246,735	2,073,693	2,660,890	3,240,578	3,798,413
가구원수	6인	7인	8인	9인	10인
기준 중위소득 (60%)	4,336,789	4,864,509	5,392,229	5,919,950	6,447,670

②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판단 방법

- 공공 취업알선기관(고용센터,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)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

- 청년(만 15세~만 34세)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,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

*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

④ 여성 가장

- 미혼, 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여성, 신체·정신장애 등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①18세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, ②60세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③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무관)을 부양하는 경우

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(제4조 내지 제5조 참조)

2. 인명구조자격증 등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

-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, ‘수상레저’, ‘수중레저’, ‘인명구조’, ‘수상구조’, ‘잠수’, ‘응급처치.구조’ ‘안전관리’ 등 해양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, 해양안전(연안안전)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

<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>

잠수기능사·산업기사기능장,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·2급, 요트조종면허, 해기사면허, 수상구조사, 응급구조사1·2급, 인명구조요원강사, 인명구조요원, 응급처치자격증 등

- (유의사항) ‘업무경험 항목과 중복성 있는 자격증’ 및 ‘취득과정 단순 수료(증)’의 경우 인정 불가, 동일 명칭·주관 자격증은 1건만 인정

3. 관련 업무경험 기준: ‘경찰·군인·소방·교정직’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

체력검사 관련 안내

- 체력검사 평가는 해양경찰서에서 진행되며, 지원자 중 일부는 당일 문진표 및 혈압측정 결과에 따라 일부종목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건강이 우려되는 지원자는 불참을 권장합니다.

< 체력검사 평가항목 및 기준 >

평가 항목	평가 기준 (PASS제)	점수 부여
가. 절대 악력 측정	'남자 31.8kg', '여자 20.4kg'	기준 충족 : 10점
나. 30초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	'남자 15회', '여자 14회'	기준 불충족 : 7점
다. 보행 상태 검사	외관상 나타나는 보행상태	중도 포기 5점

기타 참고사항

-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,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되며(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),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은 무효가 됩니다.
- 별도 체력 검사 일정은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.
 - 세부일정 및 장소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며,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이므로 지원서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절차를 걸쳐 최종 선발이 되면,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위촉식 전까지 '채용신체검사서(병원장·보건소장, 비용 2~4만원)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미제출 및 검사 결과 주의항목이 3개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촉이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
-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3. 3. 14.



군산해양경찰서장